

한국공인중개사협회

(06150)서울 강남구 선릉로 513 (역삼동, APEXTOWER) 11층 /전화 02-2062-0086 /FAX 02-879-0328 / 박은성

문서번호 서울특별시남부회-1274

시행일자 2026.06.09

수 신 지회장

참 조

선결			지시		
접수	일 자	· · ·	결재·공람		
	시 간				
수	번 호				
처 리 과					
담 당 과					

제 목 (이첩)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29호(2026.06.02.) “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“

나. 서울특별시남부회-1274(2026.6.8.) 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’

2. 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「공인중개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09호, 2026. 2. 27. 공포, 2026. 8. 28. 시행)에 따라,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입법예고(기간: 2026. 6. 2. ~ 2026. 7. 13.)하였습니다.

3. 금번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지위 부여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,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문구 명확화, 주거용 건축물 확인·설명서 서식 개정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, 각 지회에서는 회원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입법예고 바로가기>

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86976?lsNm=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%EB%B2%95>

<의견제출 바로가기>

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86976/opnCR?isReal=Y>

붙 임: (법령안)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1부. 끝.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남부회

